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,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제6항)

(현행)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'21.8.20.)
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⑤ (생 략)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 <u>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	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 <u>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생략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생활안정과
입 안 자	과 장	이 운 균
	담 당	허 정 희
	담 당 자	이 동 진 (480-2763)